



CP 뉴스 브리핑 입니다



2014.07.22

[CP 사무국 뉴스 브리핑]

1. 한국암웨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적발·제재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로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기회 박탈

한국암웨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적발·제재

<http://www.kfcf.or.kr/network/read.jsp?board=32&page=1&serialnum=16178>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인 한국암웨이(주)가 2008년 9월 1일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자신이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원은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제품을 소비자에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자에 해당하며,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이다.

다단계판매원의 수익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소매이익과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 구성되는데,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대해 미리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특정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에는 본인의 실적뿐만 아니라 하위판매원의 실적까지 포함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2008년 9월 1일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자신이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한국암웨이는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위 내용을 규정하고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시행일에 앞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모든 다단계판매원에 교부하는 판매원수첩에 이를 반영했다.

한국암웨이는 위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히 제재했고, 자격이 정지된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의 상기의 행위로 소비자는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29 조 제 1 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을 적용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 및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해당 부분 삭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 대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위로 이동>](#)
